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48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,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사회재난피해자’를 ‘피해주민’으로 용어 변경(안 제3조~제8조)
- 나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(안 제4조)
- 다.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~제4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: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구 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피해”를 “피해”로, “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동작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구 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원기준)”을 “(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”을 “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”으로, “고시”를 “통보”로, “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”를 “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

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
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대한 이의제기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, 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”를 “원인제공자”로, “상당하는”을 “상당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)”를 “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등”)”을 “생활안정 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 등”)”으로,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”을

“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피해자가”를 “피해주민이”로,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”를 “사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재난피해자가”를 “피해주민이”로, “재난피해자의”를 “피해주민의”로, “통장·이장·반장”을 “통·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”을 “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”로, “생활안정지원등”을 “생활안정지원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중소기업진흥공단”을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”를 “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 등을”로, “재난피해자 명의”를 “피해주민 명의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재난 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생활안정지원등”을 “생활안정지원 등”으로,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, “지원 받은”을 “지원한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서식 중 “피해신고서”를 “피해신고서(제6조제2항 관련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타”를 “다른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“동작구청장”을 각각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”으로, 같은 뒤쪽 중 “공공기관 및 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”를 “공공기관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뒤쪽 기호(*) 중 “앞으면 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

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”를 “앞으면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뒤쪽 중 “동작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4조(지원기준)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<신 설>

----- 피해주민-----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구 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4조(지원) ① -----

----- 피해주민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-----

----- 통보-----

결정한다.

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

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대한 이의제기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피해주민-----

--- 원인제공자-----

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)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등”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·실종·부상·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

----- 상당한 -----
-----.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등”----- 피해주민으-----.

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-----

-----.

③ ----- 피해주민이 -----
----- 사유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피해주민이 -----

----- 피해주민의 -----

당 거주지의 통장·이장·반장 등에
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
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
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
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
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
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
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
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
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
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
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
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
있다.

1. (생략)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
3. ~ 8. (생략)

제8조(지급방법) 구청장이 제6조제6항
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
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
자 명의의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
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

통·반장

⑥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
생활안정지원
등.

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급방법) -----
-----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
원 등을 ----- 피해주
민 명의

다)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,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,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[별지 서식]사회재난 피해신고서

- 피해주민-----
-----.

제9조(환수) -----
- 생활안정지원 등-----
----- 또는 -----
----- 지원한 -----
-----.

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-----

----- 필요-----
-----.

[별지 서식]사회재난 피해신고서(제6조 관련)